

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

# 국민 취업 지원제도

## 이름

### □ 국민취업지원제도란

-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 제도입니다.

\* 법적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



### □ 지원대상

I 유형	II 유형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요건심사형)</b> 15~69세 구직자 중 ①가구 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이고 ②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</li> <li>• <b>(선발형)</b>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저소득층)</b>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*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</li> <li>• <b>(청년)</b> 18세 ~ 34세</li> <li>• <b>(중장년)</b> 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</li> </ul>

- **(소득·재산)**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①신청인 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- 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-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\* (2021년 기준 중위소득)

(단위: 원/월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100%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	7,497,198
중위소득 50%	913,916	1,544,040	1,991,975	2,438,145	2,878,687	3,314,302	3,748,599
중위소득 120%	2,193,397	3,705,695	4,780,740	5,851,548	6,908,848	7,954,324	8,996,638

- **(취업경험)**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,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, ③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
-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- 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## 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구분		I 유형			II 유형			
		요건심사형	선발형		저소득층 등		청년	중장년
			청년	비경험	저소득층	특정계층		
지원대상	연령	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						
	소득	중위소득 50% 이하	중위소득 120% 이하	중위소득 50% 이하	중위소득 60% 이하	무관	무관	중위소득 100% 이하
	재산	3억원 이하	3억원 이하 <small>*고시로 규정 가능</small>	3억원 이하	무관			
	취업경험	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	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		무관			
지원내용 <small>*취업시 취업성공 수당 지급</small>	취업지원서비스		•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					
	소득 지원	구직촉진수당	• 구직활동(월 2회)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× 6개월)			-		
		취업활동비용	-			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		
지원기간	• 12개월 (6개월 연장가능)							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계급여수급자</li> <li>• 실업급여 ·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</li> <li>•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</li> </ul>							

### ○ 특정계층

- 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등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(부) · 한부모 ⑫ 구직단념 청년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⑮ 집합금지 ·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('20.8월 이후 해당업종 종사자, '21.12.31.까지)

※ 위기청소년 등 :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, 보호종료 아동 등

## □ 신청방법

- (신청주체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- (신청방법) 온라인 (www.work.go.kr/kua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- (신청장소)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-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- (제출서류)

- 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(필요시 추가서류)
  -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  -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 -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· 재산 · 취업경험 관련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
### 신청 · 접수

온라인 : www.work.go.kr/kua  
오프라인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### 문의 상담

고용센터  
국번없이 1350

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확인해주세요!

※ ("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" 이용방법)  
카카오톡 채팅창 → "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" 검색 → 채널 추가 후 이용